

교육대학원 [교육봉사활동] 이수 기준 안내문

-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-

구 분	안 내 사 항
1. 과 목 명	[교육봉사활동](교과목코드 : 067786) - 수강신청 불필요
2. 학 점	2학점 (총 60시간 활동) ❖ 교사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함
3. 이수절차	① <교육봉사활동계획서> 제출 : [대상자] 봉사기관 선정 → 활동예정 10일 전 교학행정팀 제출 ② 봉사기관 인정 승인 : 계획서 제출 시 봉사기관 인정 교학행정팀에서 확인 → 교육봉사일지 수령 (※부적합 기관은 계획서 다시 제출) ③ 교육봉사활동 실시 : 승인 확인 후 계획서에 명시된 기관에서 실시 ④ <교육봉사활동확인서>, <교육봉사활동일지> 제출 : 활동 완료 후, 학기말 공지된 제출기간에 제출 ⑤ 활동내역 확인 : 웹정보시스템 [자격관리] → [개인별교육봉사조회]
4. 봉사시간 및 학점인정기준	① 봉사기간 : 1기~4기까지 이수함을 원칙으로 함(4학기까지 반드시 종료/ 학기 및 방학 중 활동 가능/ 1일 최대 8시간 인정/ 활동시간 합산 인정) ② 봉사기관 : 하단 참조 / 사전 승인된 <교육봉사활동계획서> 상 기관만 인정 ③ 수강신청 : 별도의 수강신청 불필요 ④ 학점인정 : <교육봉사확인서> 및 <교육봉사활동일지>를 제출(총 60시간 완료)한 경우 2학점 인정 (학기말 공지된 기간 내 제출 시 반영/ 이후 제출자는 다음 학기 반영) ⑤ 활동결과 : Pass(P) / Fail(F) 처리
5. 봉사인정기관 및 활동인정기준	① 인정기준 : 교육부 고시 제2017-126호 제6조 9항 ② 인정기관 :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 및 유치원(국·공립에 한정함) 교육실습이 가능한 학교 전체, 초등학교, 초·중등 특수학교 ③ 활동인정기준 : 보조교사, 부진아 학생지도, 방과후학교 교사, 특수아동지도, 그 외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, 저소득가정 학습지도 및 멘토 활동 등
6. 유의사항	① 교육봉사생은 예비 교사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노력한다. ② 교육봉사 활동기간 동안 봉사활동일지를 성실히 작성한다. ③ 교육봉사 활동기관의 관련 제규정을 준수한다.
7. 참고사항	- 기타 문의 사항은 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(☎ 031-8005-2243)으로 문의